

#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  
●

일시 : 2005년 7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제 1]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가) 진행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  
타리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발제 2]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방향과 내용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가) 진행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

타리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 ○ 행정적 효율성과 ‘가족’ 해체 우려를 깨나가자.

지난 3월 2일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호주제 폐지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여성단체 등의 노력과 시간이 결실을 맺었다. 호주를 통한 신분증명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차별적인 가족규정 등 호주제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이러한 호주제가 폐지된 것은 일부의 집단을 제외하고는, 호주제가 지금을 모습을 갖춘 계기가 일제의 조선통제였고 해방 후 지금까지 국민통제와 관리의 기능을 이어오고 있었던 점, 더 이상 법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며 호주에 입적되었는가 여부로 가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호주제의 폐지가 양성평등이라는 ‘상식’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폐지 이후, 이제는 이러한 ‘공감대’를 담아서 어떻게 대체법안을 잘 만드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하지만 ‘공감대’를 해석하는 시각은 위치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지적된 바와 같이, 이미 호주제 폐지안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였지만 민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개념은 새롭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양성평등을 가족의 보호로 동일시 한다는 점, 현실의 다양한 가족관계를 여전히 혼인과 특정한 범위의 혈연관계로 한정시키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정부(법무부)가 내놓은 대체법안(1인1적 가족부)에도 그대로 드러났었고, 정부는 그것을 ‘국민의 정서’로 설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많은 언론에서 호주제 폐지 후 정부의 1인 1적 가족부가 시행되는 것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더 나은 대안에 대한 논의를 안보이게 했다. 정부안은 행정적인 효율성을 중요시하면서,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을 벗어나는 과도한 정보의 집적(본적, 신분변동사항, ‘가족’ 사항,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등)과 일방적으로 ‘가족’ 범위를 규정함으로써(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혼인과 혈연관계만을 ‘가족’이라고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통해서 확산시킨 인식들을 대체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결국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차별과 불편은 또 다시 여성과 소수자의 몫이 된다.

정부안과 별도로 지금까지 호적사무를 관장해왔던 대법원에서 별도의 안(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고, 이는 훨씬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본적의 개념, 가족사항에 대한 정보의 성격 등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기회는 반드시 신분등록제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또한 신분등록제도는 국가 안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법률 지위를 규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깊다. 따라서 차별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두지 말아야 하고, 이제껏 신분등록제도가 국민관리를 위해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의해 강제로 수집하고 국민관리의 차원으로 존재하던 것에서 벗어나 “한 나라의 국민임과 필요한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목적별신분등록제도가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별신분등록법은 위의 원칙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 맞는 정보만을 담고, 신분사항과 혼인사항을 분리하고 정보변동사항을 현재의 정보와 구분한다. ‘가족’ 범위에 대한 규정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혼인 관계와 혈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두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차별적인 문제들을 지적받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신분등록제도의 실행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법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나가는 노력과 함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인권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호적피해사례 증언대회’, 30대 대기업 채용시 가족정보 수집 현황조사 등)

오랜 기간 동안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놓고 고민해왔고, 드디어 그 내용을 담은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 국민의 신분에 관한 법률임에 반해서 호주제 폐지 이후 사회적인 관심은 극히 미약했다. 심지어 호주제 폐지운동을 주도하던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대체법안에 대해 소극적인 의견개진 정도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해왔고 사회적인 논의나 합의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

점점 정보인권과 여성, 가족정책에 대한 민감성과 비판적 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안은 행정적 효율성이나 가족 ‘해체’ 우려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좀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 ○ 경과보고1)

1)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의 처음모임은 2003년 초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나 이번에는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가 목적별공부안을 발표하며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부터 정리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5일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워크샵 주최: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목적별공부안 소개와 실현연대의 입장을 밝힌 워크샵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로 개칭
2005년 7월 9일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법사위원장	
2005년 7월 27일	민법개정안과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화의 간담회	
2004년 8월 12일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 실무자 간담회’ 참여 주최: 민주노동당	2005년부터 법안작업 들어가기로 함.
2004년 10월 7일	민노당과의 호적법개편에 대한 간담회 진행	공시제도, 비용, 혼인등록부 관련 쟁점 토론
2004년 12월 30일	내부 워크샵	목적별공부안 이슈화를 위한 공동사업 모색
2005년 1월 11일	호적법 개편에 대한 민노당과의 실무자 간담회	
2005년 1월 13일	기자회견: 목적별 편제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목적별편제방안, 대법원의 혼합형 1인 1적제에 대한 쟁점 토론
2005년 1월 20일	긴급토론회: “목적별 편제나, 혼합형 1인 1적제나?”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법무부안 발표에 따른 비판 성명
2005년 2월 1일	성명: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법무부의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부 형태’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5년 2월 4일	법무부의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부 형태’에 대한 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성, 시민단체 공동성명
2005년 2월 17일	목적별 편제방식의 신분등록제도 방안에 대한 기자 설명회	
2005년 2월 21일	민법개정 관련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법사위 공청회 진술	
2005년 3월 2일	호주제폐지안 본회의 통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를 확대하면서 법안작성, 발의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 인권 단체와 민주노동당 결합
2005년 3월 30일	민변 여성위원회와의 간담회	
2005년 4월 1일	민우회 상근자 포럼 강의	
2005년 4월 4일	참여연대 평간사 협의회 주최 교육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 “이등(二等) 국민,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2005년 4월 14일	주관: 노회찬 의원/ 주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2005년 4월 14일	목적별신분등록제도 안내를 위한 소책자 발간 발행: 노회찬 의원/ 제작: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2005년 5월 2일	대체법안과 관련한 비공개간담회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2005년 5월 24일	30대 대기업 채용시 가족정보 수집 현황 모니터링 결과 발표 주최: 노회찬 의원,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2005년 6월 3일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가) 작성
2005년 7월 25일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가)와 대법원안에 대한 대법원과의 간담회 주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2005년 7월 27일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주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 발제 2

#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방향과 내용

## - 목적별 안과 대법원 안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1. 서론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호주제도가 위헌임이 확인된 후<sup>2)</sup>, 3월 2일에는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 가족편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민법 가족편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호적법”으로 대표되는 신분등록법 체계 일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법 개정 전에 민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아쉬운 부분이나, 대법원과 법무부, 시민사회단체는 민법 개정 직후 빨빠르게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대한 법제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히 대법원은 신분등록을 개인별로 편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초안하였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신분등록을 목적별로 편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초안하였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자신들의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져야 할 원칙은 <“첫째,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둘째,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셋째,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유지 관리/넷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3)</sup> 이 외에 민족적 전통의 유지<sup>4)</sup> 또는 국민정서의 수용<sup>5)</sup> 등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원칙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sup>6)</sup> 이 네 가지 원칙에 맞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개정된 민법에 따른 신분등록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실질적으로 호주제도의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의 내용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7)</sup> 원칙에 부합하

2) 2001현가9 ~ 15, 2004현가5(병합)

3) 법원행정처 법정국, “호주제 폐지 대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검토보고”, 2005. 1. 17. 국회공청회 자료 2쪽.

4) 주호영,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토론”, 2005. 1. 17. 국회공청회 자료. 별지 1쪽.

5) 관배희,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의견”, 2005. 1. 17. 국회공청회 자료. 별지 1쪽.

6) “민족적 전통의 유지” 또는 “국민정서의 수용”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원칙 중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적 전통이나 국민정서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위 민족적 전통이나 국민정서라는 것은 법률사항으로 규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윤현식,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논의에 대한 비교”, 여성민우회 상근자 포럼 자료. 2005. 4. 1. 13쪽 참조.

7) 민법 가족편 개정규정의 상당수가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로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말까지는 신분등록제도의 정비 및 시행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다. 2년 반은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법률의 정비가 그만큼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면서도 안정된 구조를 가지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물경 1 세기 만에 정비되는 신분등록제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가칭)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초안을 준비하였다. 이 두 안은 법률구조상으로는 현행 호적법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신분등록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목적별 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법원안과 비교를 통하여 어떤 어려운 법안이 위에 언급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필요로 하는 네 가지 원칙을 적절하게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2. “(가칭)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과 의의

### (1) 주요 내용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3년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목적별 공부제도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로 “(가칭)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이하 목적별 안)”을 준비하였다. 그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분등록부의 목적별 편제

목적별 안은 제8조에서 신분에 관한 공부의 편제에 관해 “출생, 사망 또는 혼인 등에 관한 공부 또는 그 변동에 관한 공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이를 편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신분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신고하는 것에서부터 이를 통한 행정사무 및 증명원의 발급을 목적별(사건별)로 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현행 호적법은 신분등록과 증명을 위해 작성 · 발급되는 호적부 양식 하나에 한 개인의 출생, 사망, 혼인 등 일체의 개인정보는 물론 가족사항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다. 호적이 이렇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한 장의 공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현행 호적법이 제8조에서 호적을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家)별 편제의 경우 한 공부에 그 가족사항 일체의 정보가 기록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별도로 사건별 또는 개인별 공부를 작성할 근거가 없어 하나의 공부에 모든 개인정보를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차별, 특히 성에 따른 차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에 관한 기록 등이 그대로 남게 되는 현행 호적부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남성의 이혼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로 여기지 않으나 여성의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잔존해있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의 이혼경력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호적부의 기록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가족들의 일반적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는 형태의 신분등록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목적별 편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특히 현재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등록부와 신분관계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변동부를 따로 두어 관리 및 증명원의 발급을 이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되도록 하였다.(목적별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2) 본적제도의 폐지

현행 호적에서 주요 식별자로 기능하고 있는 본적제도를 목적별 안에서는 완전히 삭제하였다. 예초 본적제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가(家)별 편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직계일족의 발원지 또는 주거주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행 호적과는 달리 신분등록에 관한 사항을 목적별로 신고하고 이용하도록 한 목적별 안에서는 이러한 확인절차가 전혀 불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적이라는 개념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고, 식별자로 활용될 수 있는 다른 신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되어도 무방하다.

### 3)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

목적별 안에서는 모든 신고 및 증명원의 내용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일체 삭제하였다.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했던 이유는 행정사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진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과거 수기로 작성된 호적부를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편리한 식별자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전산처리기술이 발달한 현재에 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다른 식별자와 비교할 때 큰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족관계 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무수한 식별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식별자들을 다각도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사례가 빈번한 오늘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억제되어야 할 일이지 장려할만한 일은 아니다. 신분등록사무에 있어서도 증명원의 내용이나 신고사항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4) 공부의 구분 및 열람 · 발급의 제한

신분등록에 관한 각 공부를 목적별로 구분하고 특히 등록부와 변동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변동부의 작성은 편월방식이 아닌 이기방식을 준용하였다. 편월방식이 아닌 이기방식으로 할 경우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이 누적적으로 하나의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에는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변동사항에 대한 것은 따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별 안은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등의 공부를 따로 두고 있으며(안 제17조),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가족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 각 공부의 경우 열람과 발급에 있어 그 대상에 차이가 있다. 출생부와 혼인부의 경우 본인 이외의 자는 증명발급의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변동부의 경우는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증명발급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 5) 호주기준 가별 편제 내용의 일제 폐지

현행 호적법 제4장 제10절 호주승계, 제11절 입적과 복적, 제12절 일가창립, 제13절 분가, 제16절 전적과 취적의 각 규정은 완전히 폐지하였다. 현행 호적법의 각 절의 규정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 편제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했던 내용들로 목적별 안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 6) 기타

목적별 안에서는 각 신고사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었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혼인신고과정에서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고(안 제76조제2항), 친양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제4장 제6절 각 규정),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벌칙을 강화하였다.

#### (2) 목적별 안의 의의

목적별 안의 가장 주된 관심은 (양)성평등의 헌법이념 실현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신분등록과 관련된 각 증명서가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그 정보로 인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단지 '호주'라는 기준자가 삭제되었다는 것만으로 신분등록제도 자체가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편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된다. 목적별 안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원칙을 고수하는 효과를 발생시킴과 더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절차들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 소위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가족형태는 혈연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일반적 관념상의 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제가 아직 우리 사회에 정비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신분등록법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신분등록을 하도록 했던 전래의 법제도가 여러 형태의 가족들을 모두 보호하고 이들에게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목적별 안에 따라 발급되는 각 증명원 중 특히 등록부의 경우에는 본인의 현재 신분상태만을 보여줄 뿐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이나 가족관계는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혈연관계는 물론이려니와 혈연이 아닌 관계의 가족 역시도 등록부로는 확인할 수 없다. 법률 자체가 여러 형태의 가족관계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정비될 수 없다면, 소극적인 의미로나마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항상 증명도록 하는 체계를 탈피함으로써 최소한 증명원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별 안의 취지인 것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져야 할 원칙 중 공시부분에서 목적별 안은 일정한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분등록사항의 공시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공시대상이 되는 공부의 내용은 누구나 확인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목적별 안의 경우에는 등록부와 변동부, 가족증명원의 열람과 교부에 상당한 제한이 전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별 안은 자칫 공

시의 원칙을 해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신분등록에 관한 사항이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제한 역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원칙을 해손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의 원칙을 지키되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목적별 안은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원칙, 즉 "첫째,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둘째,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셋째,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 · 유지 관리, 넷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에 가장 부합하도록 준비된 안이라고 할 것이다.

### 3. 대법원 안과의 비교

대법원이 마련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이하 대법원 안)"은 법률구조상 목적별 안과 대동소이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있어서 목적별 안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으며, 특히 관할권의 문제와 편제 방식 등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안과 목적별 안을 비교 분석하면서 대법원 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 (1) 관할권의 문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률
제2조(관장) 신분관계의 등록 및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신분등록 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2조 (사무의 관장)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관장한다.

대법원 안은 신분등록사무의 관장을 대법원이 하고 있음을 법률의 규정에 명문화하였다. 이는 현행호적법과 목적별 안이 사무의 관장을 시·읍·면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 대법원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사무의 일환인 신분관계의 등록 및 그 증명에 관한 사무를 행정부처가 아닌 사법부의 소관업무로 하는 것은 3권 분립을 엄정하게 선언하고 있는 현행 헌법체계에서 부적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분등록사무가 일정하게 사법행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3권 분립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더불어 행정부처에서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등 행정입법을 하고 있는데, 신분등록사무를 사법부가 관할하는 것이 3권 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면 행정부의 행위 역시 3권 분립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대단히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선 사법행정이라는 것의 의미다. 대법원의 주장은 "사법행정"이라는 행위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법행정이라고 함은 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작용을 일컫는 것으로서 사법권행사에 부수되는 행정작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신분등록사무는 사법권행사에 부수되는 행정작용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국민의 신분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것이다.

다만, 호적사무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규칙으로 되어 있으며, 이 규칙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사법행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재에도 호적사무 일반이 대법원규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분등록사무 자체를 사법행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신분등록법 자체는 사법행정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일본 역시 우리의 시·읍·면에 해당하는 시·정·촌의 장이 호적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목적별로 신분등록제도가 운영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는 신분등록의 내용에 따라 행정행위의 관장을 개별 행정기관에 분산하여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사무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등록법 자체를 사법행정에 관한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행정부의 행정입법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행위 역시 3권 분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규칙의 제정 및 행정심판 등의 행위가 법률의 위임에 의한 것임을 배제한 주장이다. 행정부의 규칙제정권이나 행정심판권 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법률의 위임사항이다.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고유권이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행정부로 하여금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규칙을 제정하고 행정심판을 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신분등록사무가 사법행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대법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삼권분립과 관계없다는 것은 법률위임의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적별 안은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이 신분등록행정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무부가 사무관장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굳이 사무관장을 대법원으로 적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 법무부가 신분등록사무의 관장권한을 가지는 것은 행정부가 행정사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따지자면 신분등록사무는 주민행정사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체가 가지는 것이 더 타당하다. 목적별 안은 따라서 사무의 관장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독권한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이 가지는 현재의 방식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 (2) 사무비용의 문제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제7조(경비의 국고부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신분등록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u>지방자치단체</u> 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은 신분등록사무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이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요청하였음을 들어 신분등록사무와 관련된 경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실제 경비의 국고부담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나 대법원의 법안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분명해야 한다.

애초 시·읍·면에서 신분등록사무에 관한 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던 과정에서 대법원이 주장하듯 경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계기로 호적전산화를 비롯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대법원의 관할 하에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대법원규칙을 통해 전산화 이후 호적사무의 일정한 범위를 대법원이 감독해왔던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그런데 전산화 이후 각 시·읍·면에서 어느 정도 경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는 대법원이 제시한 바 없다. 이러한 근거 없이 과거 호적전산화 이전에 제기되었던 문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분등록사무는 사법행정으로 보기 보다는 행정사무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분등록사무에 있어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행정사무분야와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경우 경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이나 현행 호적법 양자가 같다. 그런데 주민등록사무의 경우에는 사무관장이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와 관련된 경비의 지출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부가 행정사무의 관장을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경비의 국가부담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간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어색하다.<sup>8)</sup>

## (3) 신분등록부의 편제방식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제9조(신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신분등록부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신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기준등록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신분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기준등록지 2.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3.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8조 (신분에 관한 공부의 편제) 출생, 사망 또는 혼인 등에 관한 공부 또는 그 변동에 관한 공부는 <u>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이를 편제</u> 한다.

### 1) 기준등록지에 대한 문제

여기서 우선 주목할 점은 대법원 안이 “기준등록지”라는 식별자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등록지에 대해 대법원 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 정작 중요한 것은 관할권의 문제와 경비의 국가부담 문제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원칙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관할권 및 경비부담 문제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일 뿐 그 자체가 원칙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굳이 대법원이 명문의 규정을 통해 사무관장의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은 법무부와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제정시기가 늦어짐으로써 법률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시기를 놓치게 되어 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2008년 1월 1일부터 효과적인 신분등록사무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신분등록법의 제정이 시간에 따른 압박을 받아 출속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적 문제에 얹매여 법 제정의 시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대법원이나 법무부 양자 공히 자체해야 할 일이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안의 시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무관장의 문제를 법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자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 것이다.

##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제10조(기준등록지의 결정) ①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신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등록지를 정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준등록지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기준등록지가 필요한 이유로 “① 각종 호적비송가사비송사건 관할법원 결정 기준/② 재외국민 신분등록사무 처리 기준 결정 기능/③ 신분등록증명서 발급시 검색기능(주민번호가 불완전)/④ 구호적부와의 연결기능/⑤ 국민정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일부 그 기능성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근거가 아니다.

① 관할법원의 결정기준은 주소지로 충분하다. 친권자 등과 본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관할법원의 지정으로 해결 가능하다.

②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분등록사무의 기준 역시 신고된 주소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는 현행 주민등록법 역시 주소지로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다. 더불어 국적법의 각 조문을 보더라도 주소지로 귀화의 요건 등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의 기준등록지라는 개념을 들 필요가 전혀 없다.

### <주민등록법>

제17조 (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총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총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의 흔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총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색기능의 문제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다른 식별자를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전산처리로 행정사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주민등록번호나 기준등록지 등 별도의 기준자를 따로 두지 않더라도 거의 시간의 차이 없이 행정사무를 진행할 수 있다. 사무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현재의 기술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

④ 구호적부와 연결을 위해서 역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다른 식별자를 연결함으로써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⑤ 국민정서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실제 민법개정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했던 사안은 호주제도 및 성씨 결정에 대한 부분뿐이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진척된 바도 없다. 호적제도에 대해서 역시 특히 국민정서가 대립할만한 지점이 거의 없다. 국민정서 운운은 법률적 문제도 아니며 실제 신분등록법과 관련된 국민의 정서적 움직임조차 없는 상황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현행 호적법이 본적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가별편제의 효율성을 위해서였다 즉, 그 가족이 서로 주소지를 달리 할 경우에도 언제든지 가족관계의 확인을 통해 연고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안이 가별 편제가 아닌 개인별 편제를 규정하면서 이처럼 본적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기준등록지를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더불어 대법원안 제10조제2항에서 기준등록지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도대체 왜 기준등록지라는 개념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준등록지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을 때 기준등록지라는 복잡한 기준을 설정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결국 기준등록지를 두겠다고 하는 것은 현행 호적법 상 본적이 가지고 있는 행정편의적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2) 개인별 편제

대법원 안은 신분등록관련 증명서를 거의 완전한 목적별 형태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등록의 편제를 목적별로 하지 않고 굳이 개인별로 하겠다는 것은 신분등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안에 신분등록부 등본 또는 원본과 같은 양식을 두겠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계속해서 종래 종이호적부와 같은 신분등록원부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발급되는 증명서는 ‘신분사항별 증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등본이나 원본과 같이 개인정보가 누적되어 있는 증명은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 안에 따르면 비록 민원인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고된 각 사항을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는 개인별로 편제된 특정한 양식이 존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대법원 안이 사용하고 있는 ‘신분등록부’의 개념이 바로 등본과 같은 개념의 양식이다. 대법원은 신분등록부를 따로 두고 증명서만을 목적별로 발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안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신분등록부가 실질적인 등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국 대법원이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분등록부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신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한 보조기억장치”이다. 그런데 증명서의 구성은 어차피 신고사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고된 내용으로 작성된 공부 자체가 증명서로 기능하면 행정사무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신분등록부는 따로 두고 증명서를 이 신분등록부의 내용 중 필요부분을 선별하여 작성·발급하겠다는 것으로서 공부에 관하여 이중의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왜 이런 작업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법원은 거꾸로 이중의 작업이 더 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대법원 안에 의하면 신분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목적별 안에 비해 한 단계 더 많은 행정사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 (4) 각 증명서의 기재사항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제15조(신분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신분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 (목적별 공부의 기재사항) ① 출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부모의 성명 3. 출생지 4. 출생연월일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혼인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배우자의 성명 3. 신고일자 4. 신고인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사망지 3. 사망일자 4. 사망사유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인지, 입양, 파양의 경우 신분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기준등록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2. 일반신분사항증명서 가. 본인의 기준등록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기준등록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기준등록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기준등록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	

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신분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신분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본인의 성명 2. 친부모의 성명 3. 양부모의 성명 4. 인지, 입양, 파양의 양태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친양자의 경우에는 출생부의 기재로 신분변동을 갈음하며 친양자가 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법원의 기록으로 보존하되 신분변동부에 그 기록을 남길 수 없다. ⑥ 이혼 및 재혼 등 혼인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혼인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이혼의 사유 및 이혼판결 또는 확인을 받은 법원 3. 신고지 4. 신고일자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가족증명원의 기재사항) 가족증명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2. 부모의 성명 3. 형제자매의 성명 4. 자식의 성명 5. 가족간의 관계 6. 구성원의 생년월일 7.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대법원 안의 특징은 각 증명서마다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안이 개인정보보호와 공시기능의 조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면 되고, 이력사항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때에는 여타의 증명서를 구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은 본인의 현재 상황을 증명하기 위하여 왜 가족관계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대법원 안 자체가 개인별 편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증명서만을 발급하는 목적별 증명발급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번번이 가족관계까지 드러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적인 증명서로 이용하려는 의도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개명과 이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갑동이 개명을 하여 김을동이 된 경우 김갑동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김을동이 자신

의 소유임을 밝히는 방법은 개명이 된 변동사항을 나타내주는 증명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임.  
이 경우 자신의 종전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여기는 현재 이름만 나옴), 그 경위를 모두 밝히고 싶으면 일반신분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됨. 또한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으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나옴. 따라서 현재 가족관계의 증명만이 필요하면 전자를, 후자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으면 후자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것임”

이와 같은 대법원의 설명은 역시 왜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함에 있어 가족 전부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목적별 안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가족증명원을 두고 있다. 이 가족증명원은 다른 공부와는 달리 발급에 제한을 두어 취급하도록 강하게 그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본인의 정보 이외의 가족사항의 정보는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가치를 가진 정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 안은 현재의 상황과 변동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빈번하게 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나 변동사항 즉 이력사항의 경우에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공공연하게 외부에 표현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증명서마다 이력사항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은 대법원이 각 정보가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현행 호적법 체계에서 조차 등본과 초본을 나누어 이력사항에 대한 부분 및 가족사항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법원의 안은 이러한 부분을 깊이 살피지 못한 듯 하다. 대법원 안은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목적 실현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 (5) 증명서의 발급대상과 과정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p>제14조(신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등) ① 제15조에 규정된 신분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 등”이라 한다)가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사건·민사집행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과 관련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12조(신분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출생·사망 또는 혼인에 관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증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누구든지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본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청구인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해당 증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읍·면의 관할구역 안의 각 증서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및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각 증서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교부</p>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신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이를 준용한다.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신분의 변동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입양·파양·친양자·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의 증서는 다음 각호 이외에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다.

1. 재판 등의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허가한 경우

2.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신분의 변동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를 원하는 청구인은 누구든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된 사항이나 교부된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가족증명원의 교부) ① 가족에 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가족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1. 세제감면, 연금 등 복지수급에 필요한 경우  
2.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취학에 관한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상속, 유증 기타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② 가족증명원은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및 제13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에게 대하여 발급하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안에 따르면 신분사항별 증명서는 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의 구분 없이 하나의 양식으로 교부되며, 교부 대상 역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위임받은 대리인” 등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목적별 안은 등록부와 변동부의 경우를 나누어 교부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증명원의 교부 역시 따로 절차를 두고 있다. 등록부의 경우에는 본인 이외의 사람들이 청구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동부의 경우에는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증명원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여금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 안에 비하여 목적별 안이 이토록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신분관계 변

동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동시에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목적별 안 역시 발급사무에 있어서 약간의 유동성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기준은 현재의 상황과 변동사항이 동시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안은 현재의 구조상으로 보자면 언제나 현재의 상황과 변동사항이 함께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민감한 정보를 상시 유출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기왕에 등본 또는 원본의 형식을 가진 양식을 완전 폐지할 생각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양식과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양식을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6) 제4장 신고 중 총론 부분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신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해당규정 없음)

대법원 안 제4장 신고 중 총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안 제30조이다. 대법원 안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가 있으면 이를 신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안이 사용하는 신분등록부라는 용어가 행정편의를 위해 정보를 누적적으로 기록하는 등본 또는 원본의 의미가 있음(비록 발급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에 신분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법률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이다.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신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에서 개인의 가장 기본적 신분정보는 확보하여야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오히려 전산화에 따라 보다 강조를 하여야 하는 부분은 전산정보 활용의 엄격한 제한”이라고 한다. 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의 주민번호, 기준등록지, 성명, 성별” 등만으로는 정확한 신원확인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다.<sup>9)</sup>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서 이 문제는 식별자의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분정보를 확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법률의 내용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법률이 아니라 현행 호적법 제34조 및 대법원 안 제30조의 규정처럼 사무과정에서 여타의 정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행정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대법원이 주장하는 전산정보활용의 엄격한 제한이라는 것은 일단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전산정보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나 전산정보활용을 논하

9) 대법원은 이에 더하여 제30조의 규정은 “개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상 사이트에 가입하는 경우 기입하는 정보의 몇 분의 일도 되지 않는 정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 없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기애 앞서 **애초에** 수집되는 정보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신고의 장 총론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사항 각 부분에 모두 기준등록지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도록 한 점이다. **기별편제개념이** 완전히 불필요한 개인별 편제에서 굳이 기준등록지라고 하는 변형된 본적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기준등록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족단위의 정보 일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에 다름 아닌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이용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성명, 주소,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식별자로 이용될 수 있는 기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전산처리 프로그램의 정비를 통해 행정사무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하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위적인 식별자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치중한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라는 원칙을 일정정도 무시하겠다는 발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은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고, 주소지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식별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명과 생년월일이 일치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 구체적인 조사내용조차 없이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주소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식별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현행 주민등록법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식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토록 되어 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의 적실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신고되거나 조사되어 확정된 주소지는 현행 호적사무와 연결되어 즉시 그 내용이 공유되도록 주민등록법은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법의 체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주장하듯 주소지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식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매우 막연한 소리로 들릴 뿐이다.

한편 대법원은 본인이 신고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고지에 출두하여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 본인에 관계된 신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제23조(신고방법) ②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신분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규정 없음)

그런데 신분등록사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굳이 인감증명을 제시해야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임.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인감증명은 불필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 (7) 제4장 신고 중 각론 부분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신고의무자) ①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혼인중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 없음) ② 혼인 중 출생하는 자녀가 부의 성을 따르지 않기로 한 별도의 사실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안은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구분하여 특히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신고 의무자를 모(母)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44조제1항에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혼중자의 경우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출생신고의무자가 부, 모가 되는 것임. 한편, 혼외자의 경우, 위와 같은 아무런 추정규정이 없고, 실제 누가 자의 부인지는 (DNA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모 외에는 알 수 없으므로,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만 규정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굳이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구분을 두어 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법의 제규정에 의할 때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상속 등의 절차 있어 특히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을 규정한 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혼인 중에 출생했느냐 혼인 외에 출생했느냐의 구분이 출생신고에 있어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목적별 안과 같이 혼인 중이나 혼인 외나를 구분하지 않고 출생신고로 포괄하여 규정하면 되고,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를 굳이 모로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안은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제71조제1항제3호와 동조 제2항에서 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개정의 과정에서 성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781조가 제1항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하여 성씨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대단히 제한적인 형태로 모의 성과 본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 때문에 대법원 안과 목적별 안에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민법의 규정은 성의 사용에 있어서 자녀 스스로의 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의 시기 역시 혼인 신고시에 하도록 되어 있어 혼인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협의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하고 있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기를 통해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성씨에 대한 자녀 스스로의 결정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민법규정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혼인신고시의 기재사항에 “모의 성·본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확정적으로 명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이 외에도 제4장 신고 부분의 각론에서 대법원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몇 가지 보인다. 여러 규정을 통해 본(本)을 등록사항으로 하거나 신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예초 현행 호적법에서 본(本)을 신고토록 한 이유는 가(家)별 편제에 따른 구분의 효과와 구 민법상 동성동본 금흔 규정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기왕에 개인별 편제의 신분등록법을 구상하고 있고, 민법이 개정되어 동성동본 금흔조항이 삭제된 현실에서 굳이 본을 신고사항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은 기준등록지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자의 기능조차 가지지 않는다.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도 만족시키는 방안으로는 본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sup>10)</sup>

## (8) 신분등록의 창설 문제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제17조(신분등록부가 없는 사람) 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한다.	제21조 (공부의 기록이 없는 자) 어떠한 공부에도 신분에 관하여 기록이 없는 자가 새로 신분등록을 할 때 각 목적별로 새로운 공부를 편제한다.
제13절 신분등록창설	(해당 장 없음)
제101조(신분등록창설신고) ① 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신분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정한 사항 외에 신분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신분등록창설신고) 신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신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할 수 있다.	
제103조(판결에 의한 신분등록창설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0)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본이 식별인자로 기능할 수 있고, 양성평등이나 기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정서에 비추어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은 식별자로서의 기능이 이제 불필요해졌으며, 본은 그 자체가 시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대한민국 성씨의 거의 대부분의 시조는 남성이며 지금까지 성씨승계는 부성을 이은 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여성이 자기 집안의 본을 신고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아버지의 본을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국민정서를 들어 본을 신고사항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현행 법률상 본(本)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국민들은 자신의 본을 가족관계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지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이 그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기 때문이다.

②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대법원 안 제4장 제13절은 신분등록의 창설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안 제17조에서는 이미 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새로 신분등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13절의 제 규정은 제17조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분등록법 자체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민법 등 실체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제17조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제13절에서 절차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신고의장 각 절에서 출생, 혼인 등 기타의 각종 신고 및 신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제13절의 제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절의 체계가 현행 호적법의 체계와 동일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대법원의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 안이 개인별 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편제에서 “신분등록부”가 가지고 있는 원본의 기능에서 유래한 것이다. 목적별 안에 따르면 목적별로 편제된 다른 공부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고 그 절차는 각 신고의 규정을 따르면 그만이다. 대법원이 굳이 개인별 편제에 급급한 결과 새로운 신분등록에 관한 절차규정을 따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더불어 제13절의 규정은 현행 호적법 제16절 전적과 취적 부분의 일부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현행 호적법과 대법원 안의 관계 규정을 살펴보자.

현행 호적법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제16절 轉籍과 就籍  第116條 (就籍申告) ①本籍을 가지지 아니한者は 就籍하려는 地를 管轄하는 家庭法院의 허가를 받고 그 謄本을 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就籍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15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就籍許可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절 신분등록창설  제101조(신분등록창설신고) ①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신분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정한 사항 외에 신분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第117條 (就籍申告의 場所) 就籍의 신고는 就籍地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102조 (직계혈족에 의한 신분등록창설신고) 신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신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할 수 있다.
第118條 (戶主에 依한 就籍申告) 就籍許可의 裁判을 얻은 자가 就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戶主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 (判決에 의한 就籍의 신고) ①確定判決에 의하여 就籍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判決確定日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判決確定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判決의 謄本 및 確定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3조(판결에 의한 신분등록창설의 신고) ①확정판결에 의하여 신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이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행 호적법에서 ‘취적’은 본적이 없는 자가 본적을 만들기 위해 취하는 행위이다. 현행 호적법은 제20조에서 호적의 기재가 없는 자로 하여금 새로운 호적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현행 호적법 제20조의 규정과 제16절 취적에 관한 규정은 전혀 성격이 다른 대상을 각기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 안에서 굳이 이 절이 필요하다면 이 절은 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의 신고사항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등록지’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기준등록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법원이 주장하듯이 현행 호적법의 체계와 같은 구조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절차규정이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률의 내용으로 포섭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제17조의 규정을 보강하면 충분하다. 이를 굳이 새로운 절로 만들어 삽입하는 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법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행 호적법 제16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이러한 규정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 (9) 대법원 안 제7장의 문제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해당 장 없음)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읍·면의 장은 신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신분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①법원은 시·읍·면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읍·면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신고서류조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 보	

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읍·면에 대하여 신분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 안은 제7장에서 시·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즉시 법원에 송부할 것과 법원의 감독권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장은 현행 호적법은 물론 목적별 안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이 장의 규정은 대법원 안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신분등록사무 관장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달리 말하면 대법원의 신분등록사무 관장권한을 더욱 명료히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규칙에 의해 현행 호적법 체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본 대법원 안이 대법원으로 하여금 신분등록사무의 관장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분명하게 관장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무관장의 권한을 가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목적별 안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법원 안 제7장의 규정은 무의미하다. 실질적인 감독권한의 행사가 목적이라면 현행 대법원규칙의 구조만으로도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사무관장의 권한을 시·읍·면장에게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행정사무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관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식은 신고서의 처리사항을 전산처리함으로써 신고서의 대법원 송부를 대신하고, 신고서는 관할 시·읍·면장의 관리로 두는 현재의 방식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세부적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법의 명료성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대법원 안과 목적별 안의 중요한 차이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
사무의 관장	대법원	시·읍·면의 장
권한의 위임	시·읍·면의 장	위임 사항 없음
사무의 감독	시·읍·면 소재관할 가정법원에 감독권의 위임	시·읍·면 소재관할 가정법원이 감독
경비의 부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신분등록기준	기준등록지	본인
신분등록편제	개인별	목적별
등본여부	신분등록부(발급은 하지 않음)	없음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이력증명	일반신분사항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가족증명원
증명발급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대리인(기본증명 또는 이력증명에 따른 구분 없음)	기본증명 : 본인, 기타 사유소명 이력증명 : 본인포함 사유소명 가족증명 : 법률규정범위내 발급
신고장소	기준등록지, 주소지, 현재지	주소지, 현주지
신고대행	본인 신분증명서나 인감증명서	해당 규정 없음
주민등록번호	사용	사용하지 않음
본(本)	사용	사용하지 않음
신분등록창설	신고사항으로 규정	규정 불필요

사무관장의 권한 규정과 신분등록의 편제에서 두 안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에 있어서 대법원의 안은 목적별 안에 비하여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준등록지라고 하는 변형된 본적개념을 도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11)</sup> 이 외에 차이점은 위 표 또는 본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안과 목적별 안은 이러한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조나 형식에서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증명원 발급의 경우 대법원 안과 목적별 안은 목적별로 증명원을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안과 목적별 안이 충돌하는 가장 분명한 지점이 신분등록의 편제방식임을 생각할 때 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부분을 일정정도 정리한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대법원이 증명서를 내용에 따라 현재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와 이력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를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대법원 안과 목적별 안은 형식적으로 차이가 없어진다. 기본증명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면서 가족관계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비록 아직은 낮은 수준의 인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증명원을 분리하여 발급할 수 있다는 사고를 한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일방적 행정편의주의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고를 조금만 더 확장시킨다면 목적별 안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대법원 안에 포함될 수도 있

11) 대법원은 기준등록지에 대해 첫째, 기준등록지를 둔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나 (양)성평등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며 둘째, 특히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경우에 어디를 기준으로 각종신고를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의 본적지 개념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가공의 기준등록지를 설정하는 만큼 그것이 대한민국 안에 주소지를 두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준등록지는 노출이 잘 되지 않는 반면 주소지는 노출이 잘 되므로 오히려 주소지를 증명항목에 두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더 위협하다는 주장을 편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중 하나가 별도의 가공정보를 될 수 있는 한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식별자로서 주소가 이용되는 것이 개인정보의 유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나 어차피 공개가 불가피한 정보 이외에 새로이 기준등록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유출되어 이용될 수 있는 정보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을 것이다.

애초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목적별로 편제해야한다는 주장이 공동행동에 의해 제기되었을 때 주로 거론되었던 우려의 지점은 첫째, 식별자가 확실하지 않아 목적별 공부 간 또는 구호적의 정보 등과 연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은 법률정비 및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자칫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안과 목적별 안을 비교해볼 때 이 두 가지 주요한 문제제기는 기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대법원이 자신들의 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목적별 안의 초안이 완성되었고, 시스템의 구축이나 비용측면에서는 대법원의 개인별 편제 안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sup>12)</sup>

본문에서 확인하였듯이 개인정보보호와 (양) 성평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라는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키는 것은 대법원 안보다는 목적별 안이며, 행정효율과 공시기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대법원 안과 목적별 안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초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안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연초 법무부가 현행 호적부보다도 더 많은 개인정보와 이력사항을 드러내 보이는 안을 준비했던 것으로 미루어 법무부의 안은 이 두 법안에 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sup>13)</sup>

앞으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각 법안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정부입법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현재의 국회관행을 생각하면 앞으로 법무부가 제시하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대법원 안이나 목적별 안의 취지가 반영되는데 곤란이 발생할 것도 예상된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양) 성평등과 개인정보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를 위한 작업은 민법의 개정과 동시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등록법 제정을 논의하는 지금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 네 가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고 입법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만 한다. 목적별 안은 이 원칙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추구해야할 구체적 방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역할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부록 1] 각 공부의 양식 예(법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출생부				혼인부			
이름	부모 이름	출생일	년 월 일	이름	배우자 이름	출생지	신고지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장 ○○○ (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장 ○○○ (인)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이름	변동 내용	변동사유	확정 기관	친부모 성명	양부모 성명	이름	전 배우자 성명	이혼사유	확정법원	신고일	신고지			
					신고지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장 ○○○ (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장 ○○○ (인)				

12) 이에 대해서는 윤현식, 위의 글, 27쪽, 표7) 참조.

13) 법무부 안의 비판에 대해서는 윤현식, 위의 글, 17~18쪽 참조.

## [부록 2] 대법원 안과 목적별 안 조문대비표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가)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신분관계의 등록 및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목적별 공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신분관계의 등록 및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신분등록 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2조 (사무의 관장)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대법원장은 제2조의 권한 중 신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대법원장은 제2조의 권한 중 신분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신분등록사무를 감독한다.	제3조 (시 · 읍 · 면장과 신분관련 사건) ① 시 · 읍 · 면의 장은 신분등록에 관한 증명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신분에 관한 공부를 같이 하는 자에 관한 신분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신분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시 · 읍 · 면의장을 대리하는 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시·읍·면과 신분등록사무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등록사무는 신분등록신고사건 등을 접수·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제4조 (감독) ① 신분에 관한 사무는 시 · 읍 · 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②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신분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시·읍·면의 장과 신분등록사건) ①시·읍·면의 장은 신분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신분등록사건에 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신분등록사무에 관하여 시·읍·면의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구등의 신분에 관한 사무)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 · 면, 읍 · 면의 장 또는 읍 · 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p>제6조(수수료등의 귀속)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신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23조제3항 및 제12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p> <p>제7조(경비의 국고부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신분등록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p> <p>제8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장 신분등록부의 작성과 신분등록사무의 처리</p> <p>제9조(신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신분등록부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신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기준등록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p> <p>②신분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준등록지</li> <li>2.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li> <li>3.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li> </ul> <p>제10조(기준등록지의 결정) ①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신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등록지를 정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②기준등록지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제11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신분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시·읍·면의 장은 신분등록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②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또는 국적을 상실한 때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분등록부를 폐쇄한다.</p> <p>③신분등록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한 신분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p>	<p>제6조 (수수료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를 신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16조제3항 및 제1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p> <p>제7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p>제2장 신분에 관한 공부</p> <p>제8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p>제9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p>제10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p>제11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p>제12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p>제13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p>제14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p>제15조 (사무비용) 신분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p>
---	--

<p>청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 등”이라 한다)가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li> <li>2. 소송·비송사건·민사집행절차에서 필요한 경우</li> <li>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li> <li>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과 관련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li> <li>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li> <li>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는 경우</li> <li>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li> </ol>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④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신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이를 준용한다.</p>	<p>하는 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증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누구든지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본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③ 청구인은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해당 증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④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신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읍·면의 관할구역 안의 각 증서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및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⑤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각 증서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13조 (신분의 변동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 등) ① 입양·파양·친양자·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의 증서는 다음 각호 이외에 열람 및 교부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판 등의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허가한 경우</li> <li>2.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li> <li>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li> </ol> <p>② 신분의 변동에 관한 공부의 열람 및 교부를 원하는 청구인은 누구든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된 사항이나 교부된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의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 (가족증명원의 교부) ① 가족에 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가족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제감면, 연금 등 복지수급에 필요한 경우</li> <li>2.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li> <li>3. 취학에 관한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li> <li>4. 상속, 유증 기타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li> <li>5.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li> </ol> <p>② 가족증명원은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및 제13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에게 대하여 발급하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의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신분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p> <p>① 신분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본인의 기준등록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li> <li>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li> </ul> </li> <li>2. 일반신분사항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본인의 기준등록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li> <li>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회복 등에 관한 사항</li> </ul> </li> <li>3.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본인의 기준등록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li> <li>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li> </ul> </li> <li>4.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본인의 기준등록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li> </ul> </li> </ol>

<p>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기준등록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 신분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신분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 (신분관련전산정보중앙관리소 설치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분 관련 사무처리의 지원 및 신분관련전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신분관련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관리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6조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관련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장 신분등록부의 기록</p> <p>제3장 신분에 관한 공부의 기재</p> <p>제17조 (목적별 공부와 그 종류) 각 공부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편제한다.</p> <p>1. 출생부</p>
---

<p>2. 혼인부 3. 사망부 4. 신분변동부 5. 혼인변동부</p> <p>제18조 (목적별 공부의 기재사항) ① 출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본인의 성명 2. 부모의 성명 3. 출생지 4. 출생연월일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혼인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본인의 성명 2. 배우자의 성명 3. 신고일자 4. 신고인 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사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본인의 성명 2. 사망지 3. 사망일자 4. 사망사유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인지, 입양, 파양의 경우 신분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본인의 성명 2. 친부모의 성명 3. 양부모의 성명 4. 인지, 입양, 파양의 양태 5. 신고지 6. 신고일자 7. 신고인 8.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p> <p>⑤ 친양자의 경우에는 출생부의 기재로 신분변동을 갈음하며 친양자가 된 사실관계에 관해서</p>
--

<p>는 법원의 기록으로 보존되어 신분변동부에 그 기록을 남길 수 없다.</p> <p>⑥ 이혼 및 재혼 등 혼인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혼인변동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인의 성명</li> <li>2. 이혼의 사유 및 이혼판결 또는 확인을 받은 법원</li> <li>3. 신고지</li> <li>4. 신고일자</li> <li>5.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19조 (가족증명원의 기재사항) 가족증명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li> <li>2. 부모의 성명</li> <li>3. 자식의 성명</li> <li>4. 가족간의 관계</li> <li>5. 구성원의 생년월일</li> <li>6.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16조(신분등록부의 기록절차) 신분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이를 기록한다.</p> <p>제17조(신분등록부가 없는 사람) 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한다.</p> <p>제18조(신분등록부의 정정) ① 신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과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의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과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p>	<p>일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신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기준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읍·면의 장이 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p> <p>제19조(신분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①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신분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p> <p>②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p> <p>제4장 신고 제1절 통칙</p> <p>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기준등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p> <p>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p> <p>제21조(출생·사망의 등에의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등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동의 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의 수리,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분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p>	<p>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부의 기재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p> <p>제23조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과 공부)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기록사항을 경정해야 한다. 다만, 본인에 있어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정정된 것으로 본다.</p> <p>제24조 (공부와 서류의 인계) 시·읍·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부 및 이에 관한 서류는 이를 당해 시·읍·면에 인계하여야 한다.</p> <p>제4장 신고 제1절 통칙</p> <p>제25조 (신고의 장소) ① 신고는 신고사건의 발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p> <p>제26조 (출생·사망의 등에의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등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동의 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의 수리,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분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p>
--	---	--

한다.

제22조(신고후 신분등록이 판명된 때) 신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신분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신분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신분등록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방법) ①신고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신분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양식) 신고양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신분 등록신고가 다른 법령이 규정한 신고에 갈음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①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의 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기준등록지·주소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기준등록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이 법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기재사항) ①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

제27조(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8조(신고양식) 신고양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신고가 타법령이 규정한 신고에 갈음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의 연월일
3.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소
4. 신고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소·본인과의 관계

②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을 따라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기재사항) ①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고의무자로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기준등록지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것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②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소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것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 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치산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30조(법령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신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신고서의 제출) 2개소 이상의 시·읍·면의 사무소에서 공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고지의 시·읍·면의 사무소는 신고서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관계 시·읍·면의 사무소에 전송한다.

<p>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①말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p> <p>②시·읍·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의 연월일을 기록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1조 및 제74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2조(동의, 승낙,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기타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p> <p>②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공서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3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이를 준용한다.</p> <p>제34조(외국에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35조(외국의 방식에 의한 증서의 등본) ①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p>	<p>제35조 (구술에 의한 신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 ① 구술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시·읍·면의 장은 신고서의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의 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59조, 제60조, 제65조, 제68조, 제76조 및 제79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6조 (동의, 승낙,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기타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자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7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의 서면에 이를 준용한다.</p> <p>제38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39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p>	<p>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기준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p> <p>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기준등록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p> <p>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이를 기산한다.</p> <p>②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p> <p>제38조(신고의 최고) ①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p> <p>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제3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준용한다.</p> <p>제39조(신고의 추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흡이 있어 신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시·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p> <p>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주소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p> <p>제40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재외공관의 장은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p> <p>제41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p> <p>②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p> <p>제42조 (신고의 최고) ①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p> <p>③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해태한 자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준용한다.</p> <p>제43조 (신고의 추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흡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공부의 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4조 (기간경과후의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시·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p> <p>제45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p>
---	--	--	--

다.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 그 밖의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절 출생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본·성별 및 기준등록지
2. 자의 혼인증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기준등록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5. 자가 모의 성·본을 따르는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③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46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신고서 기타 시·읍·면의 장이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고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④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절 출생

제48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 및 성별, 주소
2.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모의 성명 및 주소(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4.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② 기차 기타 교통기관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이 父를 정하는 때) ①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父가 未定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9조(항해중의 출생) ① 항해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地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기준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기차 기타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 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50조 (신고의무자) ①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제51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부가 미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5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地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기준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p>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4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전의 자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p>	<p>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51조(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전에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5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전에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2조(기아) ①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 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6조(기아) ① 기아를 발견한 자 또는 기아 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기준등록지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60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지자의 주소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통보가 있었을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소속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조서는 이를 신고서로 본다.</p>	<p>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기준등록지를 정하여 이를 신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p>	<p>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신고의 효력이 있다.</p>	<p>제61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신고의 효력이 있다.</p>
<p>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신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57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출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2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54조(棄兒가 사망한 때)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제58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절 인지</p>	<p>제3절 인지</p>	<p>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63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9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59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64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제63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1. 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기준등록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p>	<p>1. 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기준등록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p>		
<p>2. 사망한 자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의 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기준등록지</p>	<p>2. 사망한 자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의 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주소</p>		
<p>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 및 그 주소</p>	<p>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 및 그 주소</p>		
<p>4.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p>			

<p><b>제4절 입양</b></p> <p>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기준등록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li> <li>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기준등록지 및 주민등록번호</li> </ol>	<p><b>제4절 입양</b></p> <p>제65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li> <li>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성명</li> </ol>	<p>제65조(준용규정) ① 입양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제58조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70조(준용규정) 입양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2조(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의 승낙을 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민법」 제8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66조(양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때에 가정법원이 발급한 허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p>	<p>제66조(준용규정) 제62조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67조(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p> <p>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p>
<p><b>제5절 파양</b></p> <p>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기준등록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li> <li>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기준등록지 및 주민등록번호</li> </ol>	<p>제68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li> <li>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주소</li> </ol>	<p>제68조(준용규정) 제62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이를 준용한다.</p>	<p>제72조(친양자신고의 기재사항) ① 친양자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자의 성명(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과 국적)</li> <li>2. 친부모의 성명</li> </ol> <p>② 친양자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발급한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4조(협의상 파양의 신고) ① 「민법」 제8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민법 제900조에 규정에 의한 협의상 파양에 대하여 후견인이 파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69조(협의상 파양의 신고) ① 민법 제8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민법 제8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때에 가정법원이 발급한 허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p>	<p>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친양자를 파양한 때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3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4조(친양자 입양 취소 및 파양의 신고) ① 친양자 입양 취소 및 파양의 신고는 친생부모가 하여야 하며 신고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판결문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친양자 입양 취소 및 파양의 신고는 제68조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5조(준용규정) 제62조의 규정은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및 기준등록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p> <p>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기준등록지 및 주민등록번호</p> <p>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子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정한 경우에 는 그 취지와 내용</p> <p>4.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p> <p>② 혼인중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73조(준용규정) 제58조의 규정은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b>제8절 이혼</b></p> <p>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자의 성명·본·주민등록번호 및 기준등록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li> <li>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기준등록지 및 주민등록번호</li> <li>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li> </ol> <p>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준등록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p>	<p>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 출생연월일 및 국적)</p> <p>2. 당사자 부모의 성명 및 주소</p> <p>3. 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근친이 아니라는 사실</p> <p>② 혼인 중 출생하는 자녀가 부의 성을 따르지 않기로 한 별도의 사실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7조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6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78조 (준용규정) 제62조의 규정은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b>제8절 이혼</b></p> <p>제79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li> <li>2. 당사자 부모의 성명 및 주소</li> <li>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li> </ol> <p>제80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p> <p>④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77조(준용규정) 혼인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8조(준용규정) 제58조의 규정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p> <p><b>제9절 친권 및 후견</b></p> <p>제79조(친권자변경신고) ①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0조(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 출생연월일</li> <li>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li> <li>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li> </ol> <p>제81조(후견인경질신고) ①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p>
---	--	--

<p>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제7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의한 후견인의 선정) ①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83조(후견종료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는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후견인의 성명·기준등록지 및 주민등록번호</li> <li>2. 후견종료의 원인 및 그 연월일</li> </ol> <p>③ 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0절 사망과 실종</p> <p>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자의 성명, 성별, 기준등록지 및 주민등록번호</li> <li>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li> </ol> <p>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p> <p>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p>	<p>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6조(유언 또는 재판에 의한 후견인의 선정) ①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87조(후견종료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는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후견인의 성명 및 주소</li> <li>2. 후견종료의 원인 및 그 연월일</li> </ol> <p>③ 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0절 사망과 실종</p> <p>제88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4조에 규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자의 성명, 성별</li> <li>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li> </ol> <p>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89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p> <p>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p>	<p>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p> <p>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기타 교통기관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다.</p> <p>제87조(사변으로 인한 사망) 水難, 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망이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기준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p> <p>제88조(사형, 獄死) ①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은 재소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및 제88조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90조(신분등록불명자, 인식불능자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신분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p> <p>② 사망자가 신분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를 인식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	---	--

<p>제91조(준용규정) 제49조, 제50조의 규정은 사망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p> <p>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그 기재사항) 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부 정일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종자의 성명, 성별, 기준등록지 및 주민등록번호</li> <li>2. 「민법」 제27조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li> <li>③ 제58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li> </ol>	<p>제95조 (준용규정) 제53조, 제54조의 규정은 사망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p> <p>제96조 (실종선고의 신고, 그 기재사항) 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자가 재판부 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종자의 성명, 성별</li> <li>2. 민법 제27조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li> <li>③ 제62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li> </ol>		<p>4. 배우자의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기준등록지)</p> <p>5. 귀화한 사람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귀화한 자와의 관계</p> <p>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귀화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5. 귀화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귀화한 자와의 관계</p> <p>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귀화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p> <p>제93조(인지등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취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의 연월일</li> <li>2.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전에 가졌던 국적</li> <li>3. 부모의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기준등록지)</li> <li>4. 배우자의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기준등록지)</li> <li>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li> </ol>	<p>제97조 (인지 등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취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의 연월일</li> <li>2.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전에 가졌던 국적</li> <li>3. 부모의 성명 및 국적</li> <li>4.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li> <li>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li> </ol>		<p>제95조(국적회복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국적회복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회복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적회복허가의 연월일</li> <li>2.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전에 가졌던 국적</li> <li>3.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li> <li>4. 부모의 성명 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기준등록지)</li> <li>5.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기준등록지)</li> <li>6. 국적을 회복한 사람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회복한 사람과의 관계</li> <li>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li> </ol>	<p>제99조 (국적회복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자는 국적회복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회복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제18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적회복허가의 연월일</li> <li>2. 대한민국의 국적회복 전에 가졌던 국적</li> <li>3.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li> <li>4. 부모의 성명 및 국적</li> <li>5.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li> <li>6. 국적을 회복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회복한 자와의 관계</li> <li>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li> </ol>
<p>제94조(귀화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은 귀화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귀화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화허가의 연월일</li> <li>2. 귀화전에 가졌던 국적</li> <li>3. 부모의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기준등록지)</li> </ol>	<p>제98조 (귀화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자는 귀화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귀화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제18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화허가의 연월일</li> <li>2. 귀화 전에 가졌던 국적</li> <li>3. 부모의 성명 및 국적</li> <li>4.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li> </ol>		<p>제96조(국적취득자의 創姓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姓과 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등록지·주소지 또는 기준등록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p> <p>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00조 (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성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전의 성</li> <li>2. 창설한 성</li> <li>3. 허가의 연월일</li> <li>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창성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li> </ol>

<p>1. 종전의 姓 2. 창설한 姓과 本 3. 허가의 연월일 ⑤제4항의 신고서에는 創姓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기준등록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p> <p>제98조(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상실의 통보) ①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적이탈자의 기준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국적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로 본다.</p> <p>제12절 개명 및 姓·本변경</p> <p>제99조(개명신고) ①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의 연월일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00조(姓·本변경신고) ①「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子의 姓과 本을 변경하고자</p>	<p>제101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姓·本 2. 변경한 姓·本 3. 재판확정일</p> <p>제13절 신분등록창설</p> <p>제101조(신분등록창설신고) ①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신분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정한 사항 외에 신분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신분등록창설신고) 신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신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할 수 있다.</p> <p>제103조(판결에 의한 신분등록창설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분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5장 신분등록부의 정정</p> <p>제104조(위법한 신분등록기록의 정정) 신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공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105조(무효인 행위의 신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신분등록부에 기록을 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p>	<p>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姓·本 2. 변경한 姓·本 3. 재판확정일</p> <p>제13절 신분등록창설</p> <p>제101조(신분등록창설신고) ①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신분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정한 사항 외에 신분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신분등록창설신고) 신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신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할 수 있다.</p> <p>제103조(판결에 의한 신분등록창설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분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5장 공부의 정정</p> <p>제104조(위법한 공부기재의 정정) 공부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공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공부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공부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p>
--	--	---

<p>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기준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공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p>	<p>②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p>
<p>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03조 및 제104조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공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12조(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p>	<p>제112조 (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p>
<p>제107조(판결에 의한 신분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신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부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07조 (판결에 의한 공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공부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부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13조 (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7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신분등록부의 정정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08조 (준용규정) 제25조제1항,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7조, 제41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호적정정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읍·면의 장은 신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신분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읍·면의 장은 신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신분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6장 불복절차</p>	<p>제6장 불복절차</p>	<p>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①법원은 시·읍·면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①법원은 시·읍·면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제109조(불복의 신청) ①신분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109조 (불복의 신청) ①신분관련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읍·면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읍·면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p>	<p>③신고서류조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보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③신고서류조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보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①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0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①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읍·면에 대하여 신분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읍·면에 대하여 신분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불여 지체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p>	<p>②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불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p>	<p>제8장 별칙</p>	<p>제7장 별칙</p>
<p>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p>	<p>제111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p>	<p>제117조(별칙) ①신분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혀위의 신고를 한 사람 및 신분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혀위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14조 (별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li> <li>2.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li> </ol>

<p>② 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p>	<p>한 사람 3. 신원을 사칭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증명의 교부를 받은 사람 4. 기술적 수단 등을 이용해 권한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신분등록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처리를 하는 사람</p>	<p>면하는 것은 아니다.</p>	<p>지 아니한 때 2. 공부에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별 각 공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부 또는 제거된 공부 또는 제46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신분관련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② 전 2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p>
<p>제11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li> <li>2.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li> <li>3.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신분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li> <li>4. 이 법에 의한 신분등록사무처리의 원한에 관한 승인절차없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신분등록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신분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li> </ol>	<p>제115조 (벌칙) ① 공부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도 제1항과 같다.</p>	<p>제1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제2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제1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제2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p>	<p>제1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4조 및 제1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120조(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제117조 (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제124조(과태료의 재판) 제122조의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할 사람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p>	<p>제121조 (과태료의 재판) 제116조의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할 자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p>
<p>제121조(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제118조 (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42조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제8장 시행규칙</p>	<p>제119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2(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li> <li>2.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li> </ol> <p>② 제1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p>	<p>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전산정보가 멀실·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 시·읍·면의 장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li> </ol>		